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외동포재단

조 치 기 관 외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재외동포재단(이하 “동포재단”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내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을 현황을 보면 [별표]“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현황(2016~2018년)”과 같이 전체 2,297건 중 2,140건은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지원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157건은 [표 1]과 같이 이사장 결재를 받아 사업 지원을 결정하였다.

[표 1] 이사장 결재로 결정한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 현황(2016~2018년)

(단위: 건)

연도	사업 내역								합계
	고려인 동포	특수지 동포	계기성 기념	코리아타운 활성화	재외동포 정치력신장	국내동포 단체지원	한인회관 건립	교류증진 권익신장	
2016	-	2	-	3	6	14	3	23	51
2017	5	2	3	-	1	4	1	42	58
2018	12	1	1	-	3	4	-	27	48
합계	17	5	4	3	10	22	4	92	**157**

자료: 동포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6조와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동포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의 적절성, 지원금의 규모 등을 심의하고,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 이사장의 결재[1]를 받아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포재단은 원칙적으로 경미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신청하여 심의위원회의 검증이 필요한 단체에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등 경미하거나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장 결재가 아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2. 25.~3. 15.) 중 이사장 결재로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 157건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지원금 교부를 결정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었다.

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지원

◀◀의 “6.25 참전용사회” 사업은 2018. 3. 13. 개최한 정기 심의위원회에서 “위 단체가 친목단체 성격이 강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탈

1) 사이판한글학교에서 태풍 피해로 2018. 12. 18. 한글학교 시설 복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장 결재를 받아 지원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데도 동포재단은 2018. 12. 20. 수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을 결정함

락시켰는데, 동포재단은 2018. 5. 17. 추가로 지원 요청을 받자 이사장 결재만 거쳐 당초 신청 금액 2,000달러를 지원하는 등 [표 1]과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5개 사업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지원하였다.

[표 1]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 이사장 결재를 받아 지원한 사업 명세

(단위: 미화 달러)

연번	사업종류	심의일	결재일	공관(단체명)	사업(행사)명	지원액
1	교류증진	2018. 3. 13.	2018. 6. 4.	-	6.25 참전 국가유공자 노병 유대 및 보은잔치. 6.25 참전 수기발간, 주정부기관 태극기게양	1,500
2	교류증진	2018. 3. 13.	2018. 6. 4.	-	6.25 참전 미군에 대한 대미 보은 행사	1,500
3	교류증진	2018. 3. 13.	2018. 6. 4.	-	6.25 참전용사회	2,000
4	교류증진	2018. 3. 13.	2018. 6. 4.	-	휴스턴 6.25 참전 기념식 거행 및 안보단체 회원간 우호교류 증진	1,500
5	교류증진	2018. 3. 13.	2018. 6. 4.	-	베트남 참전 54주년 기념식 및 송년의 밤	1,500

주: (총)은 총영사관
자료: 동포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나. 기존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 단체에 지원

◆◆의 "제17회 한글 큰잔치" 사업은 기존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데도 동포재단은 이사장의 결재만 거쳐 2,500달러를 지원하는 등 [표 2]와 같이 기존 지원 실적이 없는 5개 단체의 사업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선정·지원하였다.

[표 2] 신규 신청 단체에 대해 이사장 결재를 받아 지원한 사업 명세

(단위: 미화 달러)

연번	결재일	사업종류	공관	단체명	사업(행사)명	지원액
1	2016. 8. 30.	교류증진	-	-	제17회 한글 큰잔치	2,500
2	2017. 7. 21.	교류증진	-	-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및 요녕성민족과학보급협회 종합학술회의	2,000
3	2017. 8. 22.	교류증진	-	-	무궁화나무재배·보급, 보존사업	2,500
4	2018. 8. 13.	교류증진	-	-	한마당 코리안페스티벌	2,000
5	2018. 8. 13.	교류증진	-	-	작은 음악회 또는 열린 음악회	1,500

주: (총)은 총영사관
자료: 동포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동포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 등을 개정·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을 변경하는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업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